

# 포항공과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3.01.21.

개정 2023.05.26.

개정 2024.02.01.

개정 2024.03.0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하, “LINC3.0 사업”이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에 설치하는 LINC3.0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LINC3.0 사업을 수행하는 LINC3.0 사업단(이하, “사업단”)을 포함하여 대학 내 행정부서와 부속 기관, 학과 등 관련 조직 및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포함) 및 본 대학의 제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능)** LINC3.0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학연 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
2. 기술혁신선도형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3.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체계화
4.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주도
5. 공유·협업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6. 기타 LINC3.0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 LINC3.0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부단장, 제위원회, 운영조직, 학사참여조직,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 LINC3.0 사업의 책무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조직 및 자문기구로 LINC3.0 위원회, LINC3.0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학과 연계 Steering Committee, 외부컨설팅 자문단 등을 둔다.

③ LINC3.0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조직으로 산학처 산학협력팀(이하, 사업팀), 지원기관, 학사참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본부 또는 실, 부속센터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부 훈령)’ 제22조 제

2항에 따라 사업의 총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위 규정에 따라 사업단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관련 총괄
2.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3. 사업 수행결과와 보고 및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내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LINC3.0 사업 수행에 중요한 사항

**제5조 1(사업부단장)** ① 사업부단장은 산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사업단장을 보좌한다.

1.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
2. 사업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변경 사항
3. 사업단 내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LINC3.0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제6조(운영조직)** ① LINC3.0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 내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을 두고, 사업관리와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조직으로 사업팀을 둔다.

② 산학협력정보담당관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실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정보담당관실의 관리를 총괄한다.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산학협력 정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의 소속 구성원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1.)

③ 사업팀의 팀장은 산학협력단, 대학본부와의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하여 대학소속 직원으로 임용하며, 사업팀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24.2.1.)

④ 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개정: 2024.2.1.)

1.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운영·지원 등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 책정
3. 사업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
4.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5.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
6.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7.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 보고서 작성
8. 기타 LINC3.0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⑤ LINC3.0 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산학협력인력양성센터,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두고, 각 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1.)

**제7조(참여학사조직)** ① 사업단의 참여 학사조직은 대학 내 전체 학과 및 대학원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참여 학사조직은 사업단과 학과간 연계를 위한 Steering Committee 및 특화분야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사업단에서는 학사참여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공유·협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3 장 제 위원회

- 제8조(LINC3.0 위원회) ① LINC3.0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학부총장, 이학장, 공학장, 전자컴퓨터융합공학부학장, 연구처장, 산학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술정보처장, 행정처장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학내 보직에 따른 당연직의 경우 해당 보직의 임기와 같이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③ LINC3.0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1. 대학의 비전과 LINC3.0 사업 목표 간 정합성 추진
  2. LINC3.0 사업의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3. 사업단 내 규정의 제·개정 등 주요 사안 협의 및 심의
  4. 중요한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5. 기타 LINC3.0 사업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 ④ LINC3.0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LINC3.0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산학협력인력양성센터장, 각 기업협업센터장, 산학처 내 팀장 및 LINC3.0 사업 관련 실무부서 팀장,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외부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부단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보직의 임기와 같이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1. LINC3.0 사업의 운영 방안 수립
  2. 일반적인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3. 운영 관련 필요 주요 추진사안 협의 및 심의
  4. 사업단 내 운영지침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5.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요 문제 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수립
  6. 기타 LINC3.0 사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 제10조(LINC3.0 자체평가위원회) ① LINC3.0 사업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위하여 LINC3.0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사업단장 또는 위원장의 추천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이때 자체평가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해 성과위원회 위원으로 LINC3.0 사업과 관련된 교원, 직원, 재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 관련 부서의 부서장, 총학생회장 등 교내 직위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경우 해당 임기와 같이 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 1. LINC3.0 사업의 성과 관리 방안
  - 2. 세부 사업별 달성도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
  - 3. 사업 성과지표 점검 및 설정
  - 4.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 체계 구축
  - 5. 사업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 6. 사업의 효과성, 사업성과 창출 요소 발굴 및 확산
  - 7. 기타 LINC3.0 사업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와 관련된 사항

## 제 4 장 재 정

**제11조(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 ① 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팀과 운영지원센터 재무회계팀이 수행한다.

② 편성 대상이 되는 사업단 사업비 재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비는 「대학재정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66호)」(이하, 재정지원사업 훈령)에 근거하고, 「LINC3.0 기본계획」 및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이하,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본교 및 산업체의 대응자금
- 3. LINC3.0 사업 관련 산학협력 계약 수입 및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LINC3.0 사업단이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사용료
- 5. 기타 LINC3.0 사업에 의한 수익금

③ 사업비 집행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 1. 사업추진 부서와 사업비관리 부서의 분리
- 2.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3.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

④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비 관리지침」 내 항목별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LINC3.0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교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단 소속 구성원이 산학협력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제12조(사업비 변경)** ① LINC3.0 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집행 방법 및 사업비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 연구비관리 기준, LINC3.0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취득 자산의 귀속)** ① 사업단의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 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LINC3.0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수행하는 LINC3.0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 폐지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